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9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및 선정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
-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9조)
-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 마련

및 구체화 (안 제11조, 제12조)

-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안 제18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19조)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을 고려할 경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음은 물론 위탁 기간 및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는 의회 동의 예외 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음.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음.

안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5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 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위탁사무의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제도화됨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배경인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둔 안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덧붙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조례 개선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의회 동의 예외 규정으로 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투명성 방지 등의 심사기능 약화와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동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 시·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수의 시·군이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아래의 31개 시·군 민간위탁 조례의 예외규정 현황 조사표를 참고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31개 시·군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파악 결과 >

-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8개 시·군
-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0개 시·군
- 3. 정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14개 시·군

붙임 : 경기도 시·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파악 현황

※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인구수 기준)

경기도 시·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현황

50만 이상

순서	시·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의회 동의 생략)	
		예외 조항	내 용
	경기도 본청	○	1.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원 이하의 사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1	수원시	○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2	용인시	×	-
3	고양시	○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기관 사무인 경우 의회 동의 생략
4	성남시	○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 관리사무
5	화성시	○	1.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6	부천시	×	-
7	남양주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8	안산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의회 상임위 보고한 경우
9	평택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안양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재위탁 또는 재계약 상임위 보고한 경우
11	시흥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12	김포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3	파주시	×	-
14	의정부시	×	-

순서	시·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의회 동의 생략)	
		예외 조항	내 용
15	광주시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6	광명시	×	-
17	하남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18	군포시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9	오산시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20	양주시	×	-
21	이천시	×	-
22	구리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위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사무
23	안성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4	의왕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25	포천시	×	-
26	양평군	×	-
27	여주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8	동두천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9	과천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0	가평군	○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
31	연천군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참고.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719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권이 축소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사해야 할 의회 고유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확인과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의회 동의 사유 예외 조항 일부를 삭제하기로 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u>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u></p> <p>2. <u>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u></p> <p>3. <u>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u></p>	<p>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u>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u></p> <p>2. <u>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u></p>